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2012. 7

김진수

개 요

- 주 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 일 시 2012년 7월 17일(화) 15:00~17:00
-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
- 진행순서
 - 15:00~15:10 개회사
 - ▶ 개회사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5:10~16:5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회자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 ▶ 토론자 김동섭 조선일보 전문기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현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순)
 - 16:5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7:00 폐회

목 차

I. 서 론	1
II. 현행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과세제도	3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3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4
3.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7
4. 현행 퇴직연금과세제도	9
5.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과세제도 비교	15
III.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8
1. 기본방향	18
2.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20
3.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23
4.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효과적 세제개편방향 검토	25
5.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연금수령 요건의 개선방안 검토	27
IV. 결 론	30
참고문헌	32

I. 서론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급속히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2010년 1.23을 기록하여 전 세계 22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17위를 기록함²⁾
 - 우리나라의 노인비율³⁾은 2010년 11.0%에서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⁴⁾

-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인력의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임
 - 또한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로 인해 기금 소진이 예상되므로 소득대체율⁵⁾을 장기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⁶⁾
 - 1994년 개인연금의 도입에 이어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제를 갖추게 됨
 -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년 12월말 163억원에 불과하였던 적립금의 규모는 2012년 4월말 현재 52조 1,1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1)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2) 김영철(2011)

3) 노인비율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함

4)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8년 무렵에 노인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5)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말함

6)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됨으로써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음

있으나, 최근 퇴직연금 시장은 단기계약 횡행, 보장금리 격차, 계열사 몰아주기, 전환기 보장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성장통을 앓고 있음

□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하나, 특히 연금소득과 가장 밀접한 퇴직소득과 비교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임

○ 따라서 소득간 세부담 조정 등 조세체계를 일부 정비하여 각종 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적연금 재원 확충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재검토해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과세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금소득이 퇴직소득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사회적·법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소득의 세제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1년 7월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세법에서도 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II. 현행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과세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말함

- 1961년 법정 강제적 형태로 도입된 기업복지제도인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임
 -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퇴직금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실질적인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둘째, 사내유보 위주의 퇴직금제도를 사외유보 위주의 퇴직금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셋째,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제도를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⁷⁾
 - 또한 퇴직연금제도하에서도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임
 - DC형은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임
 - IRP형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임

-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함
 - DB형은 퇴직금과 같이 급여가 사전에 보장되고 사외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한해서만 수급권이 보장되는 단점이 있음
 - DC형은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 연결계산이 쉽고 100% 사외적립이 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결과에 따라 법정퇴직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함
 - DB형은 근로자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으나 복잡한 제도 관리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DC형은 제도 관리가 간편하나 유동성 부담이 따를 수 있음

- 2011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의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됨⁸⁾
 - 또한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큰 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됨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표 II-1> 퇴직연금의 유형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특례형 IRP	개인형 IRP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DC형 준용 -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형 또는 DC형 가입자 추가설정, 자영업자 등이 설정 - 설정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기업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연금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중도인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 DC형 및 IRP는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 (퇴직시 IRP로 이전)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시금 수령자 - DB형 또는 DC형 가입자 추가설정 - 자영업자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의 내용 중 IRA를 IRP로 수정·보완함

3.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퇴직연금은 <표 II-2>에서 보듯이 2005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389개, 가입자 수는 5,024명, 적립금의 규모는 163억원이었음
- 2012년 4월말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5만 7,268개, 가입자 수는 369만 8,786명, 적립금의 규모는 52조 1,145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표 II-2>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단위: 명, 개,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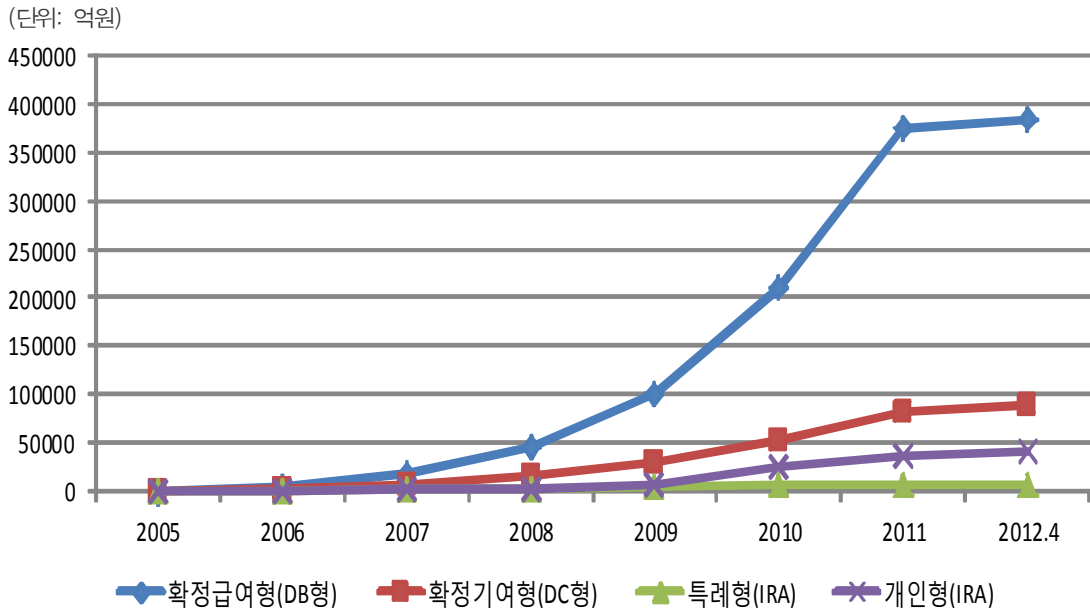
구분	가입자 수	사업장	퇴직연금의 적립액				합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퇴직계좌(IRA형)		
					특례형	개인형	
2005	5,024	389	64 (39.0)	61 (37.2)	39 (23.7)	-	163 (100.0)
2006	213,368	n.a.	5,020 (66.3)	2,006 (26.5)	508 (6.7)	33 (0.4)	7,568 (100.0)
2007	538,363	29,317	18,276 (66.3)	7,033 (25.5)	1,315 (4.8)	927 (3.4)	27,550 (100.0)
2008	1,119,552	48,714	45,818 (69.3)	16,141 (24.4)	2,688 (4.1)	1,474 (2.2)	66,122 (100.0)
2009	2,480,993	79,501	100,730 (71.7)	29,833 (21.2)	3,762 (2.7)	6,134 (4.4)	140,459 (100.0)
2010	2,393,934	94,455	209,826 (72.0)	51,530 (17.7)	5,395 (1.9)	24,720 (8.5)	291,472 (100.0)
2011	3,283,608	139,151	375,394 (75.2)	81,070 (16.2)	6,093 (1.2)	36,610 (7.3)	499,168 (100.0)
2012.4	3,698,786	157,268	383,721 (73.7)	89,776 (17.2)	5,960 (1.1)	41,689 (8.0)	521,145 (100.0)

주: () 안은 합계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 추이를 [그림 II-1]에서 살펴보면 제도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적립금 규모 측면에서 확정급여형은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림 II-1] 유형별 적립금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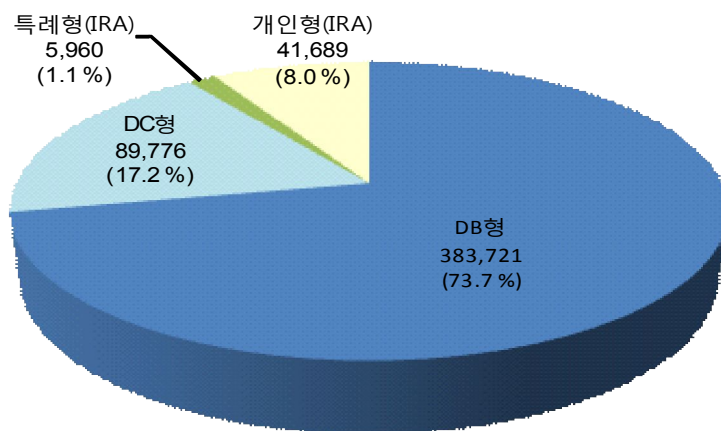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의 비중을 [그림 II-2]에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 38조 3,721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하였음
- 그 다음으로 확정기여형(8조 9,776억원)이 17.2%, 개인형 IRA(4조 1,689억원)가 8.0%, 특례형 IRA(5,960억원)가 1.1%를 차지했음

[그림 II-2] 제도 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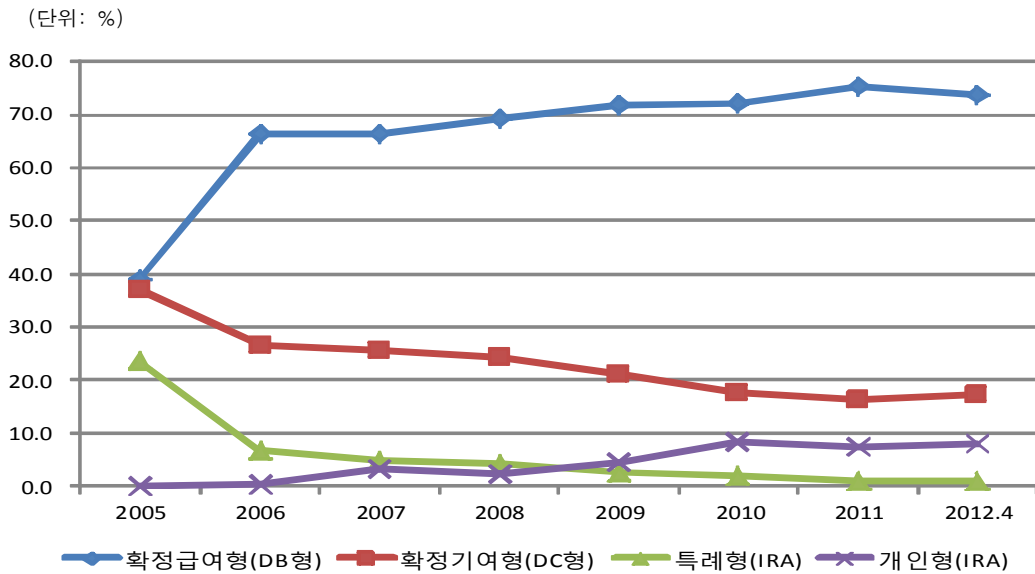
(단위: 억원)



주: 2012년 4월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비중 추이는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확정급여형과 개인형 IRA는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과 특례형 IRA는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음

[그림 II-3] 유형별 적립금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4. 현행 퇴직연금과세제도

-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적립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 지급시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 유형임⁹⁾
 - 이와 같은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2001년말 세제개편에 의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됨
 -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서 일견 완전한 EET 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서 법적 적립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EET 구조라고 보기 어려움

9) EET형 과세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과 일본은 운용단계에 부분적으로 과세(tax)가 더해져 ETT형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 1월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도 완전한 EET 구조는 아님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¹⁰⁾

가. 소득세

1) 부담금 적립 단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음¹¹⁾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함¹²⁾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특례형을 설정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¹³⁾

<표 II-3> 부담금 적립단계에서의 소득공제

구 분	부담금의 유형	공제한도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전액
	특수지역연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퇴직연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통합)

10) 부담금 적립단계에서 부담금의 일정부분만 소득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며,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며, 퇴직급여 수령단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기여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3항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제2항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함¹⁴⁾

2) 적립금 운용 단계

- 공적연금의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 근로자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함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급여수령시까지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가) 연금 형태로 수령

(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퇴직연금의 경우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과세되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됨
 -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표 II-4> 연금수령 단계 과세

구 분		연금으로 수령	일시금으로 수령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
	특수직역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
	퇴직연금	연금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

14)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의 수령시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다른 소득¹⁵⁾과 합산하여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6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2) 연금소득공제

- 연금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표 II-5>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함¹⁶⁾
 -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함

<표 II-5>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

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됨¹⁷⁾
-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의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¹⁸⁾
 - 퇴직급여공제 : - 퇴직소득금액의 40%
 - 근무연수공제 : - 퇴직소득공제금액

15)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친 소득

16) 소득세법 제47조의 2

17) 그 이유는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매년도에 수령하는 연금을 각 연도의 소득과 합하여 과세한 경우보다 소득세의 누진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임

18) 소득세법 제48조

- 근무연수의 계산 :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봄¹⁹⁾

<표 II-6> 퇴직소득공제금액

근무연수	퇴직소득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총세액은 연분연승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무기간의 총과세표준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눔)하여 1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 연승(다시 발생연수를 곱함)하여 총세액을 계산함

나. 법인세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유형별로 손금산입의 한도를 달리하고 있음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²⁰⁾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자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부담금은 사외²¹⁾에 전액 적립해야 하며, 법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됨²²⁾
 -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담

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1) 보험회사,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

하는 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할 필요 없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되지 않고, 다음의 ① 및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③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²³⁾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 ②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²⁴⁾

즉,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한도 = $\text{Max}[\text{①}, \text{②}] - \text{③}$

3) 그 외의 퇴직급여

□ 법인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지 않거나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일부만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은 다음의 총급여액 기준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함²⁵⁾

23) 이 때 손금으로 계상한 충당금을 퇴직연금충당금이라고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4항
24)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 ① (총급여액 기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함)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각의 비율을 곱한 금액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30%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5%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5%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0%

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 = Min[①, ②]

5.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과세제도 비교

- <표 II-7>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세제도를 비교하였음
 -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써 미국의 경우는 Pension Plan과 401K, 일본의 경우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각출형을 비교하였음
-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모두 사용자 부담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미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는 것을 허용함
 - 다만 미국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모두 사용자 부담금은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미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는 것을 허용함
- 미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 일정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11-7>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과세제도 비교

	미국	일본
기여 단계	<p>- Pension Plan(확정급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부담금(기업비용으로 손금산입) : 완전적립금(Full Funding Limitation)을 손금산입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excise tax 과세 • 근로자부담금(소득공제 혜택 없음) 	<p>-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부담금: 손금산입 • 근로자부담금: 5만엔 한도 소득공제
	<p>- 401k(확정기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적립한도는 근로자 세전 총보수의 100%와 50,000달러(2012년 기준) 중 적은 금액 • 사용자부담금(기업비용으로 손금산입) : 매칭부담금은 근로자가 401(k) 계좌에 적립하는 부담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며, 근로자 보수의 6%까지 손금산입 • 근로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소득공제) : 연봉의 15% 이하 또는 17,000달러(2012년 기준) 중 적은 금액 한도 : 근로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5,500달러(2012년 기준) 추가적립 가능 	<p>- 확정각출형(확정기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부담금: 손금산입 : 확정급부형연금이 있는 경우 월 25,500엔 : 확정급부형연금이 없는 경우 월 51,000엔 • 근로자부담금(개인형): 소득공제 : 자영업자 등 : 월 68,000엔(국민연금기금의 한도액과 범위 공유) : 기업형연금이나 후생연금기금 등 확정급부형 연금이 없는 경우 월 23,000엔
급여 단계	<p>- Pension Plan(확정급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3년 평균보수액과 연 200,000달러(2012년 기준) 중 적은 금액을 연금급여액의 한도로 함 • 연금급여액에 대해서는 정상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함 <p>① 정기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비용(cost) 인정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액의 과세범위가 달라짐 <p>② 비정기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시점이 연금개시일(Annuity Starting Date)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과세방식이 달라짐 • 연금개시일 이후 지급 : 통상적으로 급여액 전부를 총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그리고 연금개시일 이전 수령은 다시 연금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짐 • 연금개시일 이전 '적격연금'으로부터 지급 : 비정기급여 수령액 중 비과세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액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연금개시일 이전 '비적격연금'으로부터 지급 : 비정기급여 수령액을 과세할 부분과 비과세할 부분으로 배분하여 과세 <p>③ 일시금(5가지 과세방식 중 선택가능하며, 다음은 대표적인 과세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이전 가입 연금에 의한 지급액은 자본소득법으로, 1974년 이후 가입 연금에 대한 지급액은 10년 기준 연분연승법(10 year tax-option)을 적용 	<p>-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수령액 - 본인부담의 납입총액 - 공적연금공제)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 • 일시금: (수령액 - 본인부담의 납입총액 - 퇴직소득공제) × 1/2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
	<p>- 401k(확정기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함 	<p>- 확정각출형(확정기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수령액 - 공적연금공제)를 소득금액 과세 • 일시금: (수령액 - 퇴직소득공제 × 1/2)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

자료: 김진수·홍범교(2012).

Ⅲ.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 기본방향

-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며, 각각에 대해 세법상 취급이 다름
 - 퇴직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 공제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종합과세함²⁶⁾
 - 반면, 퇴직연금제도하에서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함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의 분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됨

- 김진수·홍범교(2012)에 따르면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하에서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퇴직소득(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의 세부담보다 다음의 경우 더 높음
 -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이 연금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년 확정연금에서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구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임
 - 근속연수가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줌

26) 다만,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음

- 또한 5년 확정연금에서 연금소득이 불리한 구간이 많아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연금수급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불리하지 않음
 -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당장 현실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퇴직자 입장에서는 연금수급기간이 장기간인 연금의 세부담과 일시금의 세부담을 비교하기보다는 단기간인 연금의 세부담과 일시금의 세부담을 비교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임
 - 이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더라도 만일 많은 퇴직자들이 연금 형태보다는 일시금 형태를 선호한다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
 - 이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임
- 이와 같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연금소득이 퇴직소득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으므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을 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 본다면,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 일

시금 형태의 수령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2.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도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함²⁷⁾

-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의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많음
 - 현행과 같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낮으면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임

-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의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 연금의 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현행과 같이 통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현행 손금산입한도 수준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27)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나. 개선방향

-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먼저 전통적인 조세이론상 EET 방식이 과세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라는 관점²⁸⁾에서 EET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퇴직연금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납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순수한 EET 방식이 아님
- 그러나 EET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퇴직연금의 기여시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 결국 일정 수준의 한도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완전한 EET 방식은 존재하기 어려움
 - 퇴직금제도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가 없으며,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체계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수령시 퇴직금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수령시 완전한 과세(T)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의 불입시 완전한 비과세(E)를 하기 어려움
 - 따라서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EET 방식의 원형에 가깝도록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해 보임
 - 현행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EET 방식을 따르면서도 TEE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 차선이라고 생각됨
-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통산하여 정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은 사용자부담금이 아

28) EET 방식, 즉, 과세시점을 저축시점이 아닌 저축인출시점으로 잡는 것이 전통적인 조세이론으로 볼 때 과세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방식임

년 자기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면, 양자를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도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임

□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의 본질적 성격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한도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한도를 분리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고²⁹⁾ 개인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됨
- 또한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납입자는 한도를 채우기 위해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저축에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 적용하기보다는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한도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현재와 같이 통산하여 운용한다면, 추가 기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240만원임을 감안하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연간 400만원 한도는 추가 기여를 유인하기에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소득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추가 기여를 유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 왜냐하면 실제 납입금액은 현행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한도에 전혀 가까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2017년 이후부터 가능함

- 국세청의 『2011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소득세를 신고한 전체 근로자 중 연금저축 납입자 비율은 12.5% 정도이며, 이들 납입자 중에서도 평균 납입금액은 220만 9천원 수준임
 - 이를 전체 근로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납입금액은 연 27만 5천원에 불과함
 - 퇴직연금의 불입자가 모두 연금저축의 가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 납입자 중의 평균 납입금액은 222만 6천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납입금액은 연 27만 7천원에 불과함

- 따라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연금의 추가기여를 유인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를 단순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불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의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소득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의 수령시 과세대상소득의 5%(주민세를 포함하면 5.5%)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됨
 -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행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노령층이고 그들의 납세협력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총연금 600만원 이상의 수령에 대해 종합과세를 의무화함으로써 퇴직자들에게 과중한 신고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특히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퇴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면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은 퇴직자가 연금 형태의 수령이 아닌 일시금 형태의 수령을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나. 개선방향

- 연금소득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그러나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노령층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납세협력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과세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분리과세를 확대하여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까지는 분리과세(5%)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민개세주의 원칙상으로도 5%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면 2009년 국민노후패널 본조사에서 개인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11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분리과세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공적연금은 이미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므로, 사실상 종합과세 신고하는 효과가 있음)과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1,200만원까지는 6%(주민세 포함 6.6%),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주민세 포함 16.5%)이므로 퇴직자의 세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것임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임

4.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효과적 세제개편방향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세법은 세부담 측면에서 연금소득이 퇴직소득에 비해 불리하다는 문제 이외에도,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김진수·홍범교(2012)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수급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많음
- 연금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연금수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연금수령시 일시금 형태의 수령과 연금 형태의 수령의 세부담 차이가 퇴직자의 연금수령 방식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연금수급기간이 긴 경우에는 투자수익률 및 인플레이션을 등 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제도에 의한 세부담 정도의 차이가 연금수령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병인(2011)³⁰⁾이 제안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 등의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향

- 퇴직연금의 연금형태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겠지만, 퇴직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퇴직자가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지를 검토해 보기로 함
- 연금수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하는 장기연금수령 공제제도 하에서는 경우에 따라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함
 - 장기수령기간 요건은 연금수령이 모두 끝난 후에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수령 중에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20년간 장기 수령하겠다고 신고하여 5년간은 20년 장기 수령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다가 6년차부터 수령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10년간 수령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에 기 적용한 20년 장기수령 기준으로 공제를 받은 5년간의 공제금액을 10년 수령 기준의 소득공제에 맞도록 사후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함
-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신고가 전제될 것인데 분리과세를 충분히 확대한다면, 종합과세는 사실상 고소득 연금소득자에 해당될 것임
 - 이들에 대해선 재정부담까지 부담하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생각됨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리과세 확대와 장기연금수령공제는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30) 임병인, 「민영연금 활성화 방안」, 『2011년 제2차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연금학회, 2011.

- 또한 대부분 장기연금수령은 누구나 원하는 사항임에도 단지 연금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조세 절감 목적으로 조절하는 사람은 이미 연금소득이 충분한 소득자로서 굳이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퇴직연금의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됨

- 다만 단기간의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세제 자체에서 원천징수세율 5%를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의 장기수령을 유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연금수령에 대해서는 단기연금수령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연금수령 요건의 개선방안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연금의 수급요건으로 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서,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③ 연금의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한편,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연금 형태의 수령은 수급자의 노후의 삶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후자금을 위한 자금의 관리·투자의 부담이 없으며,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일시금 형태의 수령은 지급된 퇴직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투자될 경우, 퇴직연금이 빨리 소진되어 노후 생활의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도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그러나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수급자나 다른 자산이 충분히

많아서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현행 소득세제에 의해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됨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보다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 구조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으며 연금소득공제도 수령하는 연금액이 클수록 낮아짐
 -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와 연분연승법에 의해 세액이 계산되어 수령액이 클 경우 연금소득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형태의 세부담이 일시금 형태의 세부담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개선방향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연금수령 요건의 개선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고령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재원의 적립 문턱은 낮추고 인출 문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연금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연금소득의 범위를 조정하여 수급기간을 장기로 연장하는 방안으로서 연금수급액의 한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연금수급액의 한도규정을 둬으로써 1년에 수령할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연금수급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분류함
 - 즉, 1년에 수령할 연금총액을 연금개시일 현재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연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정하여 연금외 수령으로 원천별 과세함

- 둘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연금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하여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은퇴자의 소득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 연금수령 시기 55

세는 그대로 유지함

- 국민연금의 연금수령 시기가 점차 65세로 늦추어짐에 따라 은퇴 후 연금수령시 까지 소득공백기가 있을 수 있음

- 셋째, 연금 가입기간 10년 요건을 상당 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가입기간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재원의 적립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넷째, 최소 연금수령기간을 상당 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5년의 연금수령기간 요건은 너무 짧아서 연금수령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으므로 최소 연금수령기간을 10-15년 이상 장기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IV. 결 론

- 국민연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의 연계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퇴직금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제도는 그렇지 못하므로 연금가입자는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인 것을 선호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을 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통산 공제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퇴직자의 세부담을 상당 폭 경감하고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간의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급액 한도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하고,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 2011.
- 김대환·류건식, 「퇴직연금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보험동향』, 보험연구원, 2010년 가을호.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보험연구원, 2011.
- 김수성,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향」, 『조세연구』, 제 10-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 김영철,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김용주 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보험개발원, 2008.
- 김원식 외,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생명보험협회, 2011.
- 김진수·홍범교,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김진수·김재진,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7-12,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진수·배준호,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6.
- 노동부,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2004.
- 문성환,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06.
- 보험연구원, 『계간 보험동향』 각호
-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명보험통계」, 각 월호
- 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각 연도
- 임병인·김세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보험개발원, 2004.
- 전병욱·정재현·김노창,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0.
- 황규영, 「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8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7.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金融税制研究會, “金融所得一体課税の推進と日本版IRA の提案”, 2009.10

森信 茂樹・河本 敏夫, “「日本版 IRA」個人型年金積立金非課税制度)導入の提言”,

FUND MANAGEMENT 2011年 新春号

鳴島安雄, “年金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税のあり方について” 税大ジャーナル, 2009.10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일본 금융세계연구회, “2010년 8월 金融廳金融税制調査會 森信提出資料”

IRS, “IRS Announces Pension Plan Limitations for 2010”, 2009.10.15.

IRS, Publication 560, “Retirement Plans for Small Business 2010”, 2011.

IRS, Publication 575, “Pension & Annuity Income 2010”, 2011.

IRS, Publication 590,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s) 2010”, 2011.